

영등포구의회
제21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김길자 의원 발의】



2019. 10. 21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165호로 2019년 10월 11일 김길자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『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』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,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』 제16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 (2019. 10. 11. ~ 10. 15.)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.5.29. 대한민국재향군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운영비 교부가 가능하도록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- 안 제4조에서는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검토결과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개정에 맞춰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를 위해 헌신·봉사한 재향군인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 개정예 문체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

운영비 지원시에는 사업 계획에 적정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, 운영비 지급 기준을 등록회원 기준으로 할지, 활동 회원수 기준으로 할지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또한 필요해 보임.

참 고 자 료

1

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[법률 제14256호, 2016. 5. 29., 일부개정]

제16조(재정)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③ 삭제 <2016. 5. 29.>

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[법률 제14183호, 2016. 5. 29., 타법개정]

※ 2016.5.29 개정전 조문

제16조(재정)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